

#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1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                              |             |
|------------------------------|-------------|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27 | 고 성 군 수     |
| 나. 회부일자 : 2009. 11. 27       |             |
| 다. 상정·의결일자 : 2009. 12. 4     |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

### 2. 개정이유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늘어나는 시설비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 규모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  |
|--|
| 가. 시설비는 보조금 지원규모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 나. 농어촌과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내용 신설(안 제3조) |
| -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및 교육운영프로그램            |
| -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

### 4.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9-826호(2009. 10. 29 ~ 2009. 11. 17)
- 의견제출사항 : 없음

#### 나.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0조 내지 제23조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합의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개정의 주요 취지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군세의 15%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군세의 15%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는 2005. 11. 4일 제정된 후 2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지원 규모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군세의 3%, 1차 개정(2007. 12. 6)에서는 군세의 7%, 2차 개정(2008. 12. 30)에서 군세의 15%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 조례 심사를 함에 있어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의 한계와 지원금액을 어떻게 설정 할 것인지,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인지와,
- 그리고 제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문 :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통학에 대한 교통수단 경비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 답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학습권보장과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지원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해두기 위함.

- 문 : 특별법에 의거 국도비 등 예산지원이 되는지, 지원이 없다면 법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 답 :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문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에는 저촉이 안되는지?
- 답 : 2010년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문 : 대응 투자비율에 있어서 시군에서 몇%를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30%범위로 한도를 설정할 수는 없는지?
- 답 : 시군에서 몇%를 부담하라는 것은 없으나 부담 액수가 높으면 사업 순위에 있어서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음. 한도를 정하기는 곤란합니다.

## 7. 토 론 : 없음

## 8. 심사결과 :

- 2009. 12.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